

보도시점 2026. 1. 2.(금) 조간 배포 2025. 12. 31.(수)
2026. 1. 1.(목) 12:00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Delta 1.1\%$)하였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가구)		'25년	'26년	증가액(증가율)
선정 기준액	단독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8.3%)
	부부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8.3%)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단독가구 기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중위소득 현황(단독가구 기준) >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선정기준액 (A, 만원)	93	100	119	131	137	148	169	180	202	213	228	247
기준중위소득 (B, 만원)	156	162	165	167	171	176	183	194	208	223	239	256
(A/B, %)	59.6	61.7	72.1	78.4	80.1	84.1	92.3	92.8	97.1	95.5	95.3	96.3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 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 1355
- (신청대상)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
 - ▶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붙임>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2. 2026년 기초연금 관련 주요 FAQ

담당 부서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044-202-3670)
		담당자	사무관	문성혁 (044-202-3672)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단독가구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228만원	247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364.8만원	395.2만원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begin{aligned}
 & \left\{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공제}^*)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공제}) - \text{부채} \right\} \\
 & \quad \times \text{소득 환산율}(4\%) \div 12\text{개월} + P^{**} \\
 & + (\text{근로소득} - 116\text{만원 공제}) \times 70\% + \text{기타소득}
 \end{aligned}$$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질의	답변
< 수급대상 >	
1. 몇 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적 가능)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주민등록 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 등 - (수급자격 없는 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실종부재 신고자 등
3. 나의 소득·재산 수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자신의 소득·재산 내역을 입력하여 수급 가능여부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내역의 차이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
4.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로,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전체 수급자의 3.0%에 해당합니다. (‘25.9월 기준)

< 신청방법 >	
5.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5세 도래자에게 우편 및 모바일 신청 안내(시각장애인은 점자 우편 포함)를 하고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기초연금 탈락자 중 매년 선정기준 변화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안내(5년간)를 받을 수 있습니다.